

「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21(월) 평창군수(환경위생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11. 25(금)
- 상정일자 : 2016. 12. 07(수) 제224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 
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환경위생과장 정재석)

- 『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』에서 정하는 푸드트럭 영업장소(현재 8개소)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
- 『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』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조례안은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을 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업장소 확대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,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영업장소)**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(이하 “음식판매자동차 영업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,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
3. 「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」 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·주관하는 행사장
4. 그 밖에 평창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이용자의 안전,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
**제3조(첨부서류)**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

가.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·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·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(이하 “시설운영자”라 한다)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: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·신고증 등 서류

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:  
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
2. 제2조제2호·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: 행사의 주최·주관  
기관 또는 축제위원회와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3.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: 규칙으로 정하는  
서류

**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**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
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.

**제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